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특산주의 범위 확대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95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특산주의 범위 확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5. 7. 16.
3. 회 부 일 : 2025.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넘어 농업과 상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임.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통주류 수출액은 2,4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이렇듯 전통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주 산업의 외연 확장·질적 성장을 통한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산업적 잠재력이 높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농산물의 수급 여건 등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저변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의 농식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시·군·구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술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여 지역특산물 산주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등).

Ⅲ. 검토의견

1. 지역특산주의 범위 확대

현행법은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地域特産酒)의 주원료(중량비 상위 3개 원료)로 제조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및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주원료 개념을 삭제하고, 지역특산주의 원료로 제조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모든 시·군·구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지역특산주의 정의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생산주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현행과 같음)
원료	<u>다음의 농산물을 주원료(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로 사용</u>	<u>다음의 농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u>
	① 직접 생산한 농산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	③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u>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모든 시·군·구를 포함</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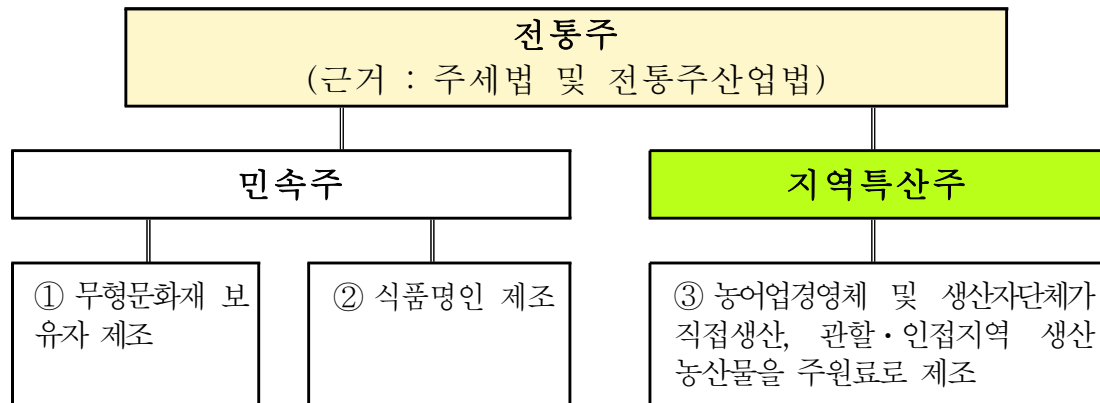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통주”란 <u>다음 각 목에</u>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2. ----- <u>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u>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u>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u> 생산한 농산물을 <u>주원료로</u>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다. ----- ----- ----- ----- ----- ----- <u>그 인접</u> 특별자치시·시·군·구(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모든 시·군·구를 포함한다)-----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u> -----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삭제>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에 따르면 “전통주”는 ①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거나 ②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민속주와 ③ 직접생산 또는 관할·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를 의미함.

[전통주 등 체계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25.6.5 제출)

그동안 이러한 지역특산주의 법령상 정의에 대하여는 ① 자연재해 등 발생시 인접 지역에서 농산물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② 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가 극소량이 함유된 경우에도 주원료로 분류되면 지역특산주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²⁾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① 지역특산주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조달 범위를 확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2) “타지역 원료 0.1%도 못쓰는 ‘지역특산주 규제’ 개선 추진”(아시아경제, 2024. 9. 5.)

장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 변동에도 원활한 원료수급과 가격 안정성을 제고하고, 생산 규모가 큰 업체의 원료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며, ② 주원료(비중 상위 3개) 개념을 삭제하면서, 인접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특산주 원료에 타지역 농산물을 일정 부분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지역특산주의 외연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수입주류와 관련하여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역특산주를 포함한 “전통주”는 「주세법」에 따른 주세 50% 감면, 용기·포장 대금 과세표준 공제의 세제 혜택과 온라인판매 허용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전통주의 세제 혜택 등]

내용			기준	발효주류	증류주류
주세 감면 (일정 물량) 「주세법」 제8조제3항	감면 요건 (신규 면허자는 제한 없음)		전년도 생산량	1,000kℓ 이하 제조	500kℓ 이하 제조
	내 용	50% 감면	금년도 생산량	~200kℓ이하 반출	~100kℓ이하 반출
		30% 감면		200초과~400kℓ 이하 반출	100초과~200kℓ 이하 반출
과세표준 공제 「주세법」제7조제3항			○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공제		
온라인 판매 허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 전통주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터넷)과 휴대 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허용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5.6.5 제출)를 재구성

개정안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원료 조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지역특산주로 인정되는 주류가 확대되며, 이에 따라 주세감면·온라인 판매 등의 혜택 대상이 확대될수록 외국에서 수입되는 외산주류가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므로 GATT³⁾의 내국민 대우 원칙⁴⁾과 다자통상규범과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주요무역국과의 양자 통상현안으로도 대두될 소지가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제 통상 마찰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지역특산주의 범위 확장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먼저, 지역특산주의 원료 조달지역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은, 지역특산주의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인접 시·군만으로는 원료조달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특산주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임.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지역특산주 시장에 대기업 등의 진입이 용이해져 중소 양조장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지역의 특산품을 타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임.

3)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4) 내국민 대우는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GATT 제3조2항), 정부 규제에 있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되며(GATT 제3조 4항), 국내 법 규제로 상품 구성성분의 일정량 또는 일정비율 이상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GATT 제3조5항) 금지(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지역특산주 원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원료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특산주 산업을 확장함으로써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주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어 한국에 주류를 수출하는 국가와의 통상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양조장의 생산규모 등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범위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개정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지역특산주 및 전통주의 정의는 현행법과 「주세법」 5)에 모두 규정되어 있는바, 각 법률이 정의하는 지역특산주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법 체계 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세법」의 개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주원료의 정의를 삭제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6조는 주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5)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제19조는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원료 정의의 삭제는 현행법의 관련 조항 체계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제조에 필요한 <u>주원료의 안정적 확보</u>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원산지 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술을 제조·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한 <u>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u>하게 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417